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6
----------	-----

2025. 3.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3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흡연 학생의 금연
실천성을 높여 건강한 성장 발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 포함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흡연 및 금연 실태조사의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가능토록 신설(안 제5조)

다.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및 물품 지원 신설(안 제6조
제4항)

라. 흡연 학생 관리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¹⁾ 충북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5.1%로 전국 청소년 평균 흡연율 4.2%에 비해 0.9% 높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여학생 흡연율은 4.0%로 제주(4.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²⁾
- 최근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늘고 있으나 실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와 흡연예방 교육 내용에 검토·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³⁾ 충북지역 청소년 담배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 용이성’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학생들이 담배 구입하는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1) 붙임 1 참조. 학생 건강검사(교육부 주관)는 전국 초·중고 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자료이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주관)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 파악 자료임.

2) 충북 여학생 음주율 전국 1위, 흡연율 2위 ‘불명예’, 동양일보. 2024. 11. 21.

3) 충북 여학생 음주율 전국 1위, 흡연율 2위 ‘불명예’, 동양일보. 2024. 11. 21.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제2조(정의)에서는 학교의 정의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정의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절히 반영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5조제2항(실태조사)에는 흡연 학생 실태조사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학생 흡연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 업무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제4항(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인기 흡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조기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이 중요함.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하게 한 것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활성화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의2(흡연 학생 관리)에 학교 내외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에서 흡연 학생들의 금연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신설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통학로에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연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 건강증진을 강화한 것이며, 학생들의 금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흡연 예방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제4호와 제7호,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1조는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외래어를 순화어로 개정한 것이며 조문을 어법 및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 하는 등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내용이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 조례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 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내에서 흡연예방 학생 지도는 가능하겠으나,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교사들이 흡연 생활 지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에 따라 교사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붙임 1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1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3년) 주요 결과

[흡연·음주]

2023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2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꺠련))은 2023년 결과 남학생 5.6%, 여학생 2.7%로 2022년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0.6%p↓)하였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 (액상형) 남 4.5%→3.8%, 여 2.2%→2.4%, (꺠련형) 남 3.2%→2.7%, 여 1.3%→1.4%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3년 남학생 6.6%, 여학생 3.5%로 2022년 결과(남 7.3%, 여 3.4%)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큰 차이 없었다.

* 시도별 현황 : 제주(7.4%)>전남(6.8%)>전북(6.6%)...서울·부산·대구(4.4%)>세종(3.7%)



* 자료원: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꺠련) 또는 꺠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1일 이상 사용한 사람의 분율

* 현재흡연율(일반담배(꺠련)) : (~'18년)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19년~)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꺠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 꺠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꺠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3.0%, 여학생 9.0%로 2022년 대비 감소(남 2.0%p↓, 여 1.9%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6.1%→5.4%, 여 5.1%→4.5%)하였다.

* 시도별 현황 : 강원(14.2%)>충북·경북(13.2%)...부산(9.5%)>서울(9.4%)>세종(8.3%)

반면,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남학생 41.3%, 여학생 50.1%로 2022년 대비 증가(남 0.9%p↑, 여 3.5%p↑)하였으며, 특히 중학생(남 21.6%→24.7%, 여 38.5%→44.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자료원: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위험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

○ (흡연) 시도 통계, 2022~2023년

단위: 명, %(SE)

지역	2022년					2023년				
	대상자 수	현재흡연율 (일반담배(궐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대상자 수	현재흡연율 (일반담배(궐련))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율	표준오차	분율	표준오차		분율	표준오차	분율	표준오차
전 체	51,850	4.5	(0.2)	5.4	(0.2)	52,880	4.2	(0.1)	5.1	(0.1)
서 울	7,244	3.3	(0.3)	4.2	(0.4)	7,364	3.5	(0.3)	4.4	(0.4)
부 산	2,975	3.9	(0.5)	4.7	(0.6)	3,137	3.6	(0.6)	4.4	(0.6)
대 구	2,550	3.2	(0.5)	3.9	(0.5)	2,642	3.7	(0.5)	4.4	(0.6)
인 천	2,873	3.3	(0.6)	4.3	(0.7)	2,927	4.9	(0.7)	5.7	(0.7)
광 주	2,015	7.0	(0.7)	8.0	(0.8)	2,091	5.2	(0.9)	6.1	(1.0)
대 전	1,769	3.9	(0.5)	4.8	(0.6)	1,853	4.3	(0.6)	5.3	(0.7)
울 산	1,741	4.9	(0.6)	5.7	(0.7)	1,664	4.5	(0.7)	5.4	(0.8)
세 종	1,045	4.7	(0.8)	5.3	(0.9)	1,097	3.0	(0.4)	3.7	(0.5)
경 기	11,651	4.6	(0.3)	5.5	(0.3)	11,934	4.0	(0.2)	4.8	(0.3)
강 원	1,935	5.8	(1.3)	7.0	(1.4)	1,895	5.0	(0.8)	6.3	(1.0)
충 북	1,941	6.1	(0.9)	7.2	(1.1)	2,001	5.1	(0.8)	5.9	(0.8)
충 남	2,234	4.2	(0.7)	5.6	(0.8)	2,360	4.4	(0.6)	5.2	(0.6)
전 북	2,249	6.3	(0.7)	7.6	(0.8)	2,235	5.5	(0.6)	6.6	(0.6)
전 남	2,158	6.3	(0.9)	7.1	(0.9)	2,223	5.7	(0.8)	6.8	(0.8)
경 북	2,740	5.4	(1.0)	6.3	(1.1)	2,704	5.0	(0.7)	6.0	(0.7)
경 남	3,420	4.8	(0.6)	5.6	(0.6)	3,495	3.6	(0.5)	4.6	(0.6)
제 주	1,310	4.1	(1.1)*	4.9	(1.3)*	1,258	5.9	(0.8)	7.4	(1.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제1호의”를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생의 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를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으로, “있도록 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를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으로,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흡연 예방”을 “흡연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촉진을 위해”를 “촉진에”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매년 1회 이상”을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자원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로, “전체 등 학교 내 모든 지역이”를 “전체가”로, “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홈페이지, 소식지, 소셜미디어”를 “누리집, 소식지, 누리 소통 매체”로 한다.

제11조 중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이란 ----- -----.
3.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이란 학생의 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 --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 ----- 있는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 -----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 -----.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학생 흡연 관련 실태 조사 및 결과

5.·6. (생 략)

7.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이 모든 학생을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흡연 예방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실태조사 -----
--

5.·6. (현행과 같음)

7. -----
----- 촉진에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
-----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대상으로 실시되고, 관련 교과
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
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
·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
은 제6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
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

-----.

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
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
방 및 금연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흡연 학생 관리) ① 학
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
-- 제7조-----
--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 전

체 등 학교 내 모든 지역이 금
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
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
하여 홈페이지, 소식지, 소셜미
디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
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
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체가 -----
-----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홍보) -----

--- 누리집, 소식지, 누리 소통
매체 -----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도록 -----
--.

관 계 법 령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

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제6조2(흡연 학생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제6조2(흡연 학생 관리)에 따른 비용은 충북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북교육청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